\bigstar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93			
결재일자	2015.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전진주	代이명주	민지선	01/22 도일환	
협 조				

2015년 보훈회관 운영비 집행 계획

2015. 1.

복지정책과

2015년도 보훈회관 운영비 집행 계획

보훈회관 현황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 130

■ 규 모 : 토지 992m²(300평), 건물 1,215.59m²(369평) - 지하1, 지상3

■ 관 장 : 송성용 고엽제전우회 성북지회장

■ 위탁운영 :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 위원: 9명 (보훈회관 입주 8개단체 회장과 복지정책과장)

■ 사용현황

I

(단위:명)

단체명/		2층 입주단체					1층 입주단체			외 부
회원수	계	상 이 군경회	유족 회	미 망 인 회	무 공 수 훈	6.25 참전	광복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 임무	월 남 참전
지회장	9	안일성	안상필	한정순	이석중	이영우	이광종	송성용	김정환	전상용
보훈청 등록	7,795	924	436	416	915	1,406	87	1,472	40	2,099
보훈회관 등록	3,543	910	436	416	350	443	85	475	68	360

※ 월남참전 유공 전우회는 외부에 별도 사무실 운영(성북구 동소문로 225-3)

운영비 집행 개요

■ 지워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인상분
인 건 비	65,052	74,504	11,719↑
시설운영비	63,165	75,765	12,600↑
소계	128,217	150,269	24,319 ↑

■ 예산과목

정책)국가유공자지원, 단위)보훈회관 운영, 세부)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변경사항

-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 : 우리구 2015년도 생활임금 (월 1,495,000원) 반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연 17,916,000원) 반영
- 예산과목 변경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 공포)에 따라, 법령에 근 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변경 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사회복지보조(307-10) →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307-10)

현행		개정(2015.1.1)	지원범위	
307민간이전	운영비	307 민간이전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에 한해 운영비 교부	
10.사회복지보조	사업비	307 민간이전 11. 사회복지사업보조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 는 경우 사업비 교부	

Ш

운영비 집행계획 세부내역

■ 인건비 등: 74,504천원

(단위 : 천원)

세 목	교부액	비고
직원급여 3명	57,684	· 2015년 생활임금(1,495,000원)관련 반영
4대보험료 등	8,820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 등
안전관리자1명	6,000	· 성북장애인복지관 위탁법인 채용자 · 보훈회관 전기실,기계실 공동 안전관리
상여금(명절) 등	2,000	· 연 2회 지급 (설,추석)
계	74,504	

■ 운영비 : 75,765천원

(단위: 천원)

세 목	교부액	비고		
공공요금 및 수용비	62,565	·수용비 및 수수료 (시무용품,무인경비,유선방송, 시설기기 등) ·제세공과금 (가스,자동차,여행자,화재 보험 등) ·공공요금 (전화,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프로그램운영비 및 활동비	10,200	·프로그램 운영비 (보훈대상자 노래교실등 운영) ·관장 업무추진비(회의비)		
시설유지관리	3,000	·목욕탕 등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 대비		
계	75,765			

Ⅳ 집행방법

- 연 4회 분기별 교부 (해당 분기 10일 이내 교부)
- 신청한 인건비 및 운영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금지
- 집행한 보조금 정산은 관련규정에 의거 증빙서류 첨부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